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2. 1.



박왕규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박왕규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□ 먼저,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는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의 형성과 올바른 가족가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 □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적용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,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, 안 제5조는 시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6조는 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,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사업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고, 안 제9조는 교류협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.

## □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1월 24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.

## 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(박왕규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00822002
--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2. 1. 24.  
발의자: 박왕규, 박정환, 정창근,  
안대국, 김화덕

## 1. 제안이유

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는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의 형성과 올바른 가족가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대상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 ~안 제4조)
- 나. 구청장이 부모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구체적 사항을 명시함(안 제5조)
- 다. 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6조)
- 라.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마. 부모교육의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
  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 및 제32조
  -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
- 나.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부모교육"이란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, 정보, 기술 등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달서구민(이하 "구민"이라고 한다)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구민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 
②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,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5조(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부모교육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
2.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
3.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·개발·평가에 관한 사항

4. 부모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  5.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시행계획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6조(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)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
2.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
3.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에 관한 교육
4.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,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
5.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
6.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

제7조(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등)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비영리 법인·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, 방법 등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재정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교류협력 등) 구청장은 부모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

교육청, 학교,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■ 건강가정기본법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건강가정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결혼준비교육
2. 부모교육
3. 가족윤리교육
4.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## 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

제4조(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)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·교구 등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